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81호
2022. 5. 9.(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137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2-13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7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21조제1항 삭제)

－ 존속기한 : ' 21. 8. 19. ~ ' 22. 8. 18.(1년) ※ 최초설치 : ' 16. 8. 19.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 인력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138명에서 19,139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 존속기한 : ' 21. 8. 19. ~ ' 22. 8. 18.(1년) / 최초설치 : ' 16. 8. 19.

나. 「공직선거법」 개정(' 22. 4. 20.)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4급 +1, 6급 +1)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6 → 전문경력관 +6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